의 안 번 호	제 2020 - 1호
의 결 연 월 일	2020. 2. 5. (제 1 회)

의결사항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 기금운용지침, 위원회 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 개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 출 자	위원장 박 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연월일	2020. 2. 5.

1. 의결 주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조문 정비사항 등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 (관련 법령개정 반영)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운영규정

** (조문정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활동지침,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2. 제안 이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29 공포)사항을 **기금운용 관련 제반 규정에 반영**하고

- 그 외 금융위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 내부통제 규정 개정사항, 단순 조문 정비사항(자구수정 등)**도 반영

3. 주요 내용

가.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및 안건상정 요건 구체화**

○ 기금운용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 기금운용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발의하는 사항 등을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명시

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상근전문위원 3인 위촉 및 임기(3년),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성과평가보상 → 위험관리·성과보상), 외부 전문가 위원 위촉 방법 등

다. **기타 개정 사항**

○ 금융위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 내부통제 규정 개정사항, 단순 조문 정비사항(문맥, 자구수정)** 등도 반영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

* 기금운용지침, 위원회 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 개정

2020. 2. 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 관련 주요 개정사항 ····· 2

Ⅲ. 기타 개정사항 ····· 5

Ⅳ. 향후 계획 ····· 5

[붙임1]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 조문대비표

[붙임2]

1.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2.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3.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4.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5.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붙임3]

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안)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3.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

4.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개정(안)

Ⅰ 추진 배경

□ 상근전문위원 설치,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발표('19.10.11, 제7차 기금위 보고)

○ 상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완료**

※ 국무회의 의결('20. 1. 21) 후 공포(1.29)

○ 이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기금운용 관련 제반 규정**(기금운용지침,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반영**할 필요

○ 특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제화된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에 명시**

□ 그 외 **금융위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상 **내부통제 규정 개정**

* 공적연기금이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적용
- ①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아닐 것, ②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증선위 승인을 받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를 적용

○ 기타 기금운용지침,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 **각종 지침, 기금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조문 정비***

* 지침 상 용어 정의(설명) 추가, 문맥(주어-서술어 일치) 및 자구 수정 등

Ⅱ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및 상정요건 구체화

□ 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사항에 **위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 기금운용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을 기금위 의결사항**에 추가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하는 안건**을 기금위에 **공식 상정하는 안건**으로 명시

2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

○ (**전문위원회 안건 구체화**)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안건 상정 명시**

*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모두 동일

○ (**전문위원회 기능 확대**) 현행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기능에 **위험관리를 추가**하고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성과평가보상→위험관리·성과보상) 등 반영

- 공단 내 위험관리부서는 **중요 위험관리 사항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역할**) 현행 **분과별 운영방식 폐지**, 전문위원회 **안건 상정기준 구체화** 등

* 분과별 운영방식 폐지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도 동일하게 반영

○ (**전문위원회 지원**) **복지부와 공단(기금본부)**은 **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지원**하도록 규정

□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근하는 전문위원 3명은 공동으로 3개 전문위원회에 참여**

-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

□ 각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전문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상근하는 전문위원 3인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함**

* 각 전문위원이 임기(3년) 동안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맡을 수 있도록 개선

-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직무대행**

○ (**외부 전문가위원 구성**)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pool**(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3명을 위촉**하도록 규정

* 원활한 논의 연계를 위해 최초로 구성되는 민간전문가단은 기존 지침에 따라 위촉된 투자정책, 성과평가보상전문위 위원으로 구성

-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아 유형별(근로자 2, 사용자 2, 지역가입자2)로 위촉**하도록 규정

○ (**위원 대리참석 허용**) 전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금위 위원이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기금위 가입자대표 중 **다른 위원이 대리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만 해당)

3 위원 책임성 강화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전문위원회 위원(상근 전문위원 포함)도** 기금위 위원들과 **동일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징구**

○ 그 외 기금위 위원들의 의무, 기피·회피 규정* 등을 **전문위원회 위원(상근 전문위원 포함)에게도 준용**하도록 하여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적 책임 강화**

* 제11조의2(위촉직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제12조(위원의 의무 등), 제13조(위원의 기피·회피) 등

□ 상근 전문위원 및 지원인력 근로계약 관련

○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 **위원의 책임·의무* 위반 시 해촉**(근로계약 해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및 직무윤리 서약서에 기재된 사항, 기금운용 관련 취득한 내부정보·자료 공개 금지 및 제3자의 이익 도모행위 금지의무

- 상근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지원인력**(민간전문가)**도 동일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참고: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중 위원의 책임·의무 관련 내용>

- **(선관의무)** 위원 및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여야 함
- **(공정한 직무 수행)** 위원 및 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처리해야 함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원장 등에게 보고
- **(직위남용 금지)** 위원 및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금지
- **(기밀정보 관리)** 위원 및 직원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밀정보를 다른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향후 책임성 담보를 위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 별도 추진

Ⅲ 기타 개정사항

□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의 증권선물위원회 승인 근거 마련

○ 금융위가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추진 중(2.5 공포 예정)

* 공적연기금이 2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적용
- ①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아닐 것, ②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증선위 승인을 받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를 적용

- 이에 따라, 공단이 관련 요건*을 갖추어 증선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①수탁자책임 부서와 특정증권등의 운용부서간 독립적 구분, ②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③내부통제규정 위반시 임직원에 대한 처리 근거, ④수탁자책임부서가 외부기관 등과 회의시 통신 기록작성 및 유지 의무화, ⑤내부통제기준의 준수내용 및 위반 임직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계연도마다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 지침 조문 정비

○ 지침 상 **용어 정의 추가**, 조문 상 **주어-서술어 불일치**, 기타 조문 상 **문맥·자구정비 등 반영**

※ 기금운용지침 및 각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붙임2)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사항+조문정비사항 모두 반영, 그 외 지침(붙임3)은 조문정비사항만 반영

Ⅳ 향후 계획

□ 기금운용지침, 위원회 운영규정 등 각종 지침

○ 기금위 의결 이후 시행

붙임1 **국민연금법 시행령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생 략)	**제7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생 략)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용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운용위원회"로 본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해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위원회의 회의, 보고서의 작성·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준

현 행	개 정 안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6명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0조의4(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달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를 실무평가위원회와 운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공단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76조---------- ---------- ---------- ----------.
제8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②(생 략) ③ 공단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⑤ (생 략)	**제8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제76조----------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기금운용지침,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1.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개요) 제2조(지침의 목적) <신 설> 제3조(기금운용 목적) 제4조(기금운용 원칙) 제5조(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제2장 ~ 제6장 (생 략)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개요) 제2조(지침의 목적) 제2조의2(정의) 제3조(기금운용 목적) 제4조(기금운용 원칙) 제5조(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제2장 ~ 제6장 (현행과 같음)
제1조(지침의 개요) ①·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거래기관 등 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이하 "기금운용관련자"라 한다)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조(지침의 개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 ---------- ---------- ---------- ---------- ----------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이란 기금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 예상하지 못하는 손실 및 기금 명성의 실추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말한다. 2. “액티브운용”이란 벤치마크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운용을 말한다. 3. “위탁운용”이란 기금운용에 있어 공단 외부의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운용”이란 기금운용에서 공단 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벤치마크지수(Benchmark Index)”란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6. “외환익스포저”란 환율의 변동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변

현 행	개 정 안
	동될 수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 외환익스포저의 규모는 미달러화(USD)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관련 제규정의 순에 따른다.
제3조(기금운용 목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다음 각 호의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3조(기금운용 목적)** ① ----------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4. 기금운용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5.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결정 6.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정책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제5조(기금운용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4.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5. 기금운용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6.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결정 7.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정책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현 행	개 정 안
령 제154조 제1항의 주주제안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포함) 7. 위탁운용 목표범위 8.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9.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 심의 < 신 설 > 10.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령 제154조 제1항의 주주제안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포함) 8. 위탁운용 목표범위 9.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10.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 심의 11. 기금운용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는 사항 12.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기금운용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의 투자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심의한다.	④ ----------.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검토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투자 정책에 관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
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주주권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⑤ ---------- ----------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4. (현행과 같음)
가.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가. (현행과 같음)
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 ---------- ---------- ---------- ----------
다.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항	
라. 기금운용본부 의결권 행사 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라.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토·결정	8. -------- 기금의 수탁자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청한 사항
⑥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이하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운용본부 전체 및 기금운용본부장의 성과급 지급률과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기준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⑥ ---------- 위험관리·성과보상 ----------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 정책제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신 설>	1. 국민연금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언
1.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 정책개발 · 제언	3. ---------- 성과평가, 성과보상에 ----------

현 행	개 정 안
3. 보상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언 4.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금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5. ---------- 기금운용의 위험관리, 성과보상에 관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검토를 요청한 -----
⑦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의 관리·운용을 수행한다. 1. ~ 11. (생 략)	⑧ ---------- ---------- 관리·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1. ~ 11. (현행과 같음)
⑤ 책임투자 및 주주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	⑤ ---------- ---------- ---------- ---------- ---------- ----------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 ⑦ (생 략)	---------- ---------- ----------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험의 관리) ③ 공단 내에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리스크관리센터를 두며, 리스크관리센터장은 기금운용의 중요 위험관리 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고한다.	**제19조(위험의 관리)** ③ ----------리스크관리실을 두며, 리스크관리부문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에게 보고한다
제20조(내부통제) ① ~ ② (생 략) <신 설>	**제20조(내부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등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제8조의 6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① ~ ② (생 략) ③ 국민연금연구원 및 외부평가전문기관이 작성한 성과평가보고서는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가 검토하고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제21조(성과평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하 '국민연금연구원'이라 한다) ----------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가----------

현 행	개 정 안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상정책) ① (생 략) ② 보상정책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에서 정하며,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개정할 수 있다.	**제22조(보상정책)**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제24조(보고 및 감사) ① ~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이 기금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업무설명 및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및 감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

2.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목 차 **제1장 총칙 (생 략)** **제2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2조 ~ 제11조 (생 략) 제11조의2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12조 (생 략) 제13조 (위원의 기피·회피) 제14조 (생 략) **제3장**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생략)** **제4장 전문위원회** 제21조 ~ 제21조의2 (생 략) 제22조 (운영세칙) 제23조 (생 략) **제5장 보칙 (생 략)**	목 차 **제1장 총칙 (현행과 같음)** **제2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2조 ~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위촉직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위원의 기피·회피 등)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3장**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4장 전문위원회** 제21조 ~ 제21조의2 (현행과 같음) 제22조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104조에 따라 운용위원회에 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제2조(운용위원회의 기능) 운용위원	**제2조(운용위원회의 기능)** 국민연금

현 행	개 정 안
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는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3.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4.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5.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수탁자 책임 활동 주요 정책	5.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정책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주주제안의 경우,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포함)
6. 위탁운용비중 결정	6. 위탁운용비중 결정
7.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7.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8.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	8. 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
9. 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결정에 관한사항	9.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9의2. 운용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는 사항
10.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 ③ (생 략)	**제9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④ ----------

현 행	개 정 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1.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생 략)	----------. 1. ---------- 2. 제13조의 ---------- 기피·회피 등에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의2(기금운용위원회 활동보고서)**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운용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결사항 등 활동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매년 공개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 ④ (생 략)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3. (생 략) ⑥ (생 략)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다만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을 신규 위촉하	**제11조의2(위촉직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이 ----------

현 행	개 정 안
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신규 위촉직 위원은 ---------- ---------- ---------- ----------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위원의 기피·회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생 략) 2. 기금 운용의 성과 측정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제15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서면심의) ① (생 략) 1. (생 략)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② (생 략)	**제20조의2(서면심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의 ---------- 기피·회피 등에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1. ~ 2. (생 략)	**제21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국민연금기금 운용성과의 평가, 성과보상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3. ---------- 위험관리, 운용성과의 평가 및 ---------- ---------- ---------- 위험관리·성과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해당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영리활동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 ---------- ---------. 이 경우 제 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외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3.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

현 행	개 정 안
서 법률·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 등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6명으로 한다)
4. 법률, 경제, 경영 및 금융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4. ~ 7. <삭 제>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6.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책임투자 관련 자문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또는 책임투자 관련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 설 >	④ 제3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	⑤ 제3항제3호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신 설 >	⑥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로서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현 행	개 정 안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경제·경영 및 금융 관련 학문분야 등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4. 법률, 경제, 경영 및 금융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6.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책임투자 관련 자문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또는 책임투자 관련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연구 경력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지원인력으로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생 략)	**제22조(전문위원회 운영규정)** (현행과 같음)
제23조(준용규정) ① 제11조의2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제12조제2항의 운용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	**제23조(준용규정)** ① 제11조의2,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 제14조의 ----------. ② 전문위원회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

현 행	개 정 안
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제5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6조(자료제출 등)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업무 설명 및 교육 기회의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6조(자료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은 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회의참석수당, 안건심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위원 등의 수당)** ---------- ---------- ---------- 보수, 수당(회의참석수당, 안건심의료 등)·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 ---------- ---------- ---------- ----------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규정은 2020년도의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규정명>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운영세칙	<규정명> ----------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
제2조(기능)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사항 중 기금의 투자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심의한다. 1. ~ 4. (생 략)	제2조(기능)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관계 전문가 등 총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3명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제3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 3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

현 행	개 정 안
	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임기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임기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중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 <삭 제>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및 금융 분야 2. 대체투자 분야 3. 해외투자 분야 4. 자원개발 분야	③ <삭 제>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의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4조의2(민간전문가단)** ①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 및 금융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를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0명 내외로 민간전문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단에 속한 사람 중에서 3명을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 제>
제6조(간사) ①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간사)** ① ----------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1. 보고 및 심의 안건의 제출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4.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제공 5.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논의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로 본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논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여 해당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소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③ 위원장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

현 행	개 정 안
2. 운용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실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 신 설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전문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 중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같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다른 위원을 대리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의 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의 운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5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22조 및---------- ---------- ----------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 ---------- ---------.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1.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검토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검토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 검토·결정	**제2조(기능)**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에 ------. 1. ~ 2. (현행과 같음) 3.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4. ----------
가.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가.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나. 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나.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다.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	다. ~ 라. (현행과 같음)
라. 기금운용본부 의결권 행사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결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 및 회수 결정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책임투자 관련 사항 검토	7. (현행과 같음)
가. 책임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현 행	개 정 안
나. 책임투자 시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다. 책임투자 이행 관련 적용범위 라.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변경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토·결정	8. ----------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청한 사항 검토
제3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회는 14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관련사항, 책임투자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	**제3조(구성)** 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3명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6명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임기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임기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현 행	개 정 안
를 둔다. 1.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에 관한 사항 2. 책임투자 분과위원회 :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에 관한 사항 ④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는 9인 내외로, 책임투자 분과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가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제2항 1내지3호의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단체 유형별 각2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서약) 위원회 위원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 국민연금 기금 운용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장기	**제5조(위원의 서약)** 전문위원회 위원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 국민연금 기금 운용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위원

현 행	개 정 안
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안을 검토 또는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붙임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1. ~ 5. (생 략)	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안을 검토 또는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붙임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전체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삭 제>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책임투자 분과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전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⑤ <삭 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전체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⑥ <삭 제>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전문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기금운용본부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 략)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4.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5.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이 된다. ② 간사는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4.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제공 5. 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6. 그 밖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건의 공개 등) ①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해야한다. 전문위원회 논의안건이 기금운용위원회 상정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공개한다. ② ~ ③ (생 략)	**제9조(안건의 공개 등)** ①----------제2항----------위원회에---------제1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필요에 의한 외부인사 초청강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장 및 제3조제1항 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위원회 등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전문위원회---------- ---------- ---------- ---.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 ---------- 전문위원회 ---------- 전문 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소속 : ○ ○ ○ 성명 : ○ ○ ○ 본인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본 위원은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본 위원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행동하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 본 위원은 관계법령과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및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기금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처리하겠습니다. 4. (비밀유지의무) 본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재임 중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본 위원은 직무 수행시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으며, 관련 사실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소속 : ○ ○ ○ 성명 : ○ ○ ○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원(장) 해촉과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보안상의 책임 및 관련 제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본 위원은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본 위원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행동하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 본 위원은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기금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처리하겠습니다. 4. (비밀유지의무) 본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재임 중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본 위원은 직무 수행시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으며, 관련 사실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 (서명)

5.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 · 성과보상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규정명>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규정명>**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며,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보상에 관한 주요사안을 검토 또는 결정하고, 성과평가·보상에 관한 정책개발·제언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5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제22조 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 ---------- ---------- ---- 성과평가·보상, 위험관리---------- ---------- ----------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운영에---------- ---------- ----------
제2조(기능)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경유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신 설>	**제2조(기능)** ①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 ---------- ---------- ---------- ---------- ----------. 1.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개발·제언

현 행	개 정 안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실무평가위원회를 경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전문위원회 위원은 가입자·전문가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회 인력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3명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제3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 3명

현 행	개 정 안
② 전문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전문위원회 인력풀은 2년마다 가입자·전문가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임기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국민연금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임기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 전문위원회의 ----------총괄--------. ③ ----------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하는----------.
<신 설>	**제4조의2(민간전문가단)** 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 위험관리, 성과평가 및 보상 분야 전문가를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0명 내외로 민간전문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제1

현 행	개 정 안
	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단에 속한 사람 중에서 3명을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운영)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5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규정에도 ----------.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전문위원회 위원 중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2항각 호에 따라 같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다른 위원을 대리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장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3. (생략) 4.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5.~6. (생략)	**제6조(간사)** ① ---------- 국민연금재정과장, 기금운용본부 리스크관리부문장, 국민연금연구원장----------.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3. (생략) 4.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제공 5.~6. (생략)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당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수당 등)** ① ----------범위----------. ②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수탁자책임활동지침, 성과평가보상지침,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개정(안)**

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원칙 2> (생 략) (생 략)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정책을 검토하고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이거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사안,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결정합니다. (생 략)	<원칙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정책을 검토하고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이거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사안,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1항에 해당하는 주주제안은 제외), 공개서한 발송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결정합니다. (현행과 같음)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제105조에 따라 마련된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위탁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위임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① ~ ③ (생 략) ④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위결한 사안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 ----------.
제5조(의사결정 주체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3. (생 략) ③ ~ ⑥ (생 략)	**제5조(의사결정 주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재적위원 1/3 이상이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3.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지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보상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제105조에 따라 마련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
제3조(주체별 역할) ① ~ ② (생 략) ③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④ ~ ⑤ (생 략)	**제3조(주체별 역할)** ① ~ ② (생 략) ③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우수인력에 대한 우대) ① 운용본부는 장기 운용성과, 기금운용시스템 개선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차별화된 고용 및 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7조(우수인력에 대한 우대)** ① 기금운용본부는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교육훈련) 운용본부는 기금 운용 성과 제고를 위하여 직원들이 전문지식과 투자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훈련)** 기금운용본부는 ----------.
제29조(자긍심 고취) 운용본부는 운용인력이 공적 연기금 종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자긍심 고취)** 기금운용본부는 ----------.
제30조(인력 평가 및 성과 향상) 운용본부는 성과에 따라 운용인력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용 및 보수계약 등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자를 관리함으로써 성과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인력 평가 및 성과 향상)** 기금운용본부는 ----------.
제32조(인사전문가) ① 운용본부는 장기적, 종합적 보상정책 집행 및 유지를 위하여 인사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2조(인사전문가)** ① 기금운용본부는 ----------. ② (현행과 같음)

4.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강령은 「국민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기금운용 관련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제101조에 의해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제23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생 략) 1. "기금운용관련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의결·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원 및 직원은 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원 및 직원은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① 위원 및 직원은 법 제83조에 따라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제5조(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① ----------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

현 행	개 정 안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준수서약) ① (생 략) ② 위원 및 직원은 기금운용의 관련자가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강령의 준수에 대한 서면 동의로서 별지의 서약서를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기관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준수서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제1호 서식의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유가증권 보유 및 매매신고) 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5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결정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본인 이름 및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 및 매매한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내역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유가증권 보유 및 매매신고)** 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 ② ----------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가증권(□보유 □매매)신고서를 ---------- 제출----------.